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 기간 연장의 건 (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46
----------	------

발의연월일: 2025. 8. 25.

발의자: 이시훈·이미자·정재호
이광규·박희연 의원

1. 주문

주민청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

2. 제안 이유

가. 주민청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24년 9월 6일 의회에 수리된 이후, 청구인대표자 초청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갖았었고, 관계부처(법제처, 행정안전부) 및 이해관계자,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 일부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청구인측에 제시하고 협의를 추진하였음

나. 그러나, 청구인대표자 측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없어 협의가 미료된 상태로 추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현재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2024.7.1.제안, 행정안전위원회) 중으로 법률 제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음

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의결 기간을 제9대의회 의원 임기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3. 행정문화위원회 의결 기간 연장 동의 서명: 따로 붙임

4. 관련 법령

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 기간 연장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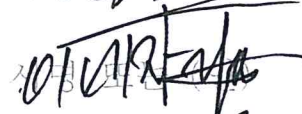
주민청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한 의결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 8. 25.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이 시 훈

서명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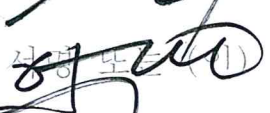
부위원장 이 미 자

서명  (인)

위 원 정 재 호

서명  (인)

위 원 이 광 규

서명  (인)

위 원 박 희 연

서명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